

1. 다음 중 상표등록 부등록 사유(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한함)의 적용에 있어 출원주체에 따라 상표등록 가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만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한글 워드 소프트웨어에 사용하고자 하는 「세종대왕」  
ㄴ. 컴퓨터에 사용하고자 하는 「EDISON」  
ㄷ. 운동용 의류에 사용하고자 하는 「박지성」  
ㄹ. 완구류에 사용하고자 하는 「태권브이(V)」  
ㅁ. 신사복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유의 여신상」의 도형  
ㅂ. 스포츠용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OLYMPIC」  
ㅅ. 어학원 서비스에 사용하고자 하는 「연세학당」

- ① ㄱ, ㄴ                                      ② ㄷ, ㅂ                                      ③ ㄷ, ㅅ  
④ ㄹ, ㅁ                                      ⑤ ㅂ, ㅅ

2. 상표등록요건 판단시,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표법상 상품류 구분(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분류)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명문규정이 있다.  
② 심사실무는 유사상품 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유사군 코드내에 속하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한다.  
③ 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자체의 속성,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주류적 입장이다.  
④ 심사실무와 판례 모두 경쟁상품이면 유사상품이고, 비경쟁상품이면 비유사상품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다.  
⑤ 추상적으로 상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조어상표를 문제시되는 양 상품에 사용할 경우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견해도 ③과 동일한 입장이다.

3. 선출원에 의한 甲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 甲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乙이 자기의 출원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선등록 상표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乙의 출원상표가 병존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② 출원상표를 등록한 후 甲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더라도 乙의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③ 甲이 출원상표의 등록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乙이 명백히 입증한다 하더라도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④ 乙이 상표등록출원 후 등록여부결정 전에 甲의 상표권을 양도 받으면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 ⑤ 乙의 상표등록출원시 존재하였던 甲의 등록상표가 乙의 출원상표의 등록여부결정 전에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乙의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4. 강학상의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 ㄱ. 출원상표가 저명상표와 저촉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 제척기간이 있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ㄴ. 희석화침해이론은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한 정도에 이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이다.
- ㄷ. 상표가 직접 상품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을 통하여 광고된 결과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더라도 주지상표가 될 수 없다.
- ㄹ. 등록된 저명상표의 침해금지청구권의 범위는 주지상표와 달리 이종상품이나 이종 영업에까지 미친다.
- ㅁ.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은 주지저명상표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ㄹ, ㅁ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이다.
- ②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늦게 출원하여 등록받은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에게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은 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6. 파리협약 당사국인 일본에 등록된 상표 X(국내외 수요자간에 인식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상표권자인 甲의 국내 대리인인 乙이 甲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국내에 상표등록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이 심사단계에서 상표등록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①의 조건과 무관하게 등록 후 5년 이내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①의 조건과 무관하게 등록 후 5년 이내에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의 출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甲은 乙이 국내에서 상표 X를 무단사용 하는 것에 대하여 상표법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 ⑤ 乙은 조약 당사국인 일본에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받은 경우이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7. 甲은 “天緣”이라는 한자로 구성된 상표를 “사이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그 한글 음역인 “천연”으로 구성된 상표의 우측상단에 “®”표시를 한 상표를 사용하여 “사이다”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법상 제 문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없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甲의 등록상표는 불사용취소심판(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천연”사이다에서 “천연”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하여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甲의 등록상표는 부정사용취소심판(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표시는 통상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표장이므로 허위표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제3자인 乙이 “천연 사이다”라는 표장을 사이다 상품에 사용할 경우 “天緣”과 “천연”은 칭호가 동일하므로 甲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 ⑤ 甲의 상표 사용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하였다는 이유로 하는 상표 등록의 취소심판(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8. 甲은 국내에서 주지된 乙의 미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였는데 심사착오로 상표등록이 되었다. 이 경우 甲과 乙 양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의 등록상표가 무효로 되기 전이라면 법원이 그 등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乙은 자기가 사용해 온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③ 乙은 甲의 등록상표가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그 심결의 확정일 다음 날 자기가 사용해 온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④ 甲의 등록상표가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乙은 자기의 주지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로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甲의 등록상표가 무효로 되기 전이라면 그 존속기간 동안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는 없다.

9. 甲은 “새한”이라는 상표를 가방류, 화장품류, 신발류 및 의류에 상표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자기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인기리에 판매 하여 오던 중 乙이 “주식회사 새한”이라는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의류세탁업”을 시작하는 경우 甲과 乙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의 의류세탁업이 의류를 서비스업의 원재료로 사용하므로 자기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서로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여 상표권의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은 자기의 표장을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서비스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甲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 ③ ②에서 乙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乙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乙은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乙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표장선정의 동기 등 주관적 사정과 표장 및 영업목적의 유사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⑤ 사안의 정황으로 보아 乙에게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음이 강하게 추정되므로 甲은 자기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0. 상표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을 하였으나 요지변경이라는 이유로 보정각하 된 경우에는 별도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권리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거절결정이 등록이의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인은 당해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정상품병행수입의 항변 또는 권리남용의 항변도 심리 대상에 포함된다.
- 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그 지정상품 중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판장으로부터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디자인보호법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만, 설문 중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며 설문 외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나 출원의 분할 또는 보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최초에 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분할하는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디자인을 구성하는 모양만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 모양만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⑤ 제1국에서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국 출원일 전에 당해 디자인이 공개된 때에는 그 공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2.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 색채를 가하는 경우에 색채가 백색 및 흑색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백색 및 흑색에 대하여 채색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이 입체를 표현한 경우에 정면도 이외의 도면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 색채를 표현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가 투명한 경우가 있다.
- 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 또는 크기 등에 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3.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벌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받침대」에 관하여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자는 그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받침대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②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에 관한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에 대하여 한 벌 물품 전체로서 통일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한 벌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을 구성하는 각 물품의 손잡이 부분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④ 탁상용 라이터, 재떨이 및 담배함으로 구성되는 「한 벌의 꺾연용구 세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통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되고, 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출원의 일부를 분할하여 탁상용 라이터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⑤ 한 벌 물품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한 벌의 책상과 책꽂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A와 A에 관한 책상과 유사한 디자인등록출원 B가 같은 날 출원된 경우 A와 B는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 제2항의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4.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디자인권자 甲의 등록디자인 A와 乙의 등록디자인 B가 동일자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디자인 A 및 디자인 B에 모두 유사한 디자인 C에 대하여 甲 및 乙은 서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자 甲은 독창적으로 창작한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저작권이 발생한 乙의 저작물과 동일한 형상인 때에는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③ 디자인권자 甲은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하는 경우로서 乙이 실시허락을 하지 않는 때에는 乙에 대해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디자인보호법 제70조)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디자인권자 甲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중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丙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 디자인권자 甲은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乙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과 동일한 범위의 전용실시권을 丙에게 설정할 수 없다.

15. 디자인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 ③ 심판장은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분을 피 청구인과 그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에 대하여 불일치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디자인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대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자기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이 그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당해 등록유사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6.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비밀청구기간 중에 당해 비밀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 ②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당해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공보가 발행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때 당해 디자인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2년간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후에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으로 청구한 후에는 당해 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해서 출원공개신청을 할 수 없다.

17. 유사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기본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불펜이고 유사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만년필인 경우, 그 만년필에 대하여 그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자기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자기의 공지된 디자인에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같은 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만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후에 설정등록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18. 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에 적합한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초콜릿」이라고 기재되고, 첨부도면에는 은박지로 포장한 초콜릿을 나타낸 것이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것
-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승용차 및 자동차완구」라고 기재되고, 첨부도면에는 승용차를 나타낸 것이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것
- ③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시계가 부설된 라디오」라고 기재되고, 첨부도면에는 시계를 점용할 수 있는 라디오를 나타낸 것이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것
- ④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자전거」라고 기재되고, 첨부도면에는 자전거용 페달을 나타낸 것이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것
- ⑤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연필」이라고 기재되고 첨부도면에는 형상이 동일한 청색심의 연필과 적색심의 연필을 각각 나타낸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

19.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소위 확대된 선출원) 및 제1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설문 중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다)

- ① 선출원디자인이 물품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디자인이고, 후출원디자인이 그 선출원디자인의 모양을 제외하고 형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그 후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② 후출원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후출원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2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동일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선출원디자인과 후출원디자인이 모두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그 후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⑤ 선출원디자인이 형틀에 관한 디자인이고, 후출원디자인이 그 형틀로부터 만들어진 물품의 디자인인 경우 그 후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 또는 보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없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응접탁자와 소파에 관한 각각의 디자인등록출원을 병합하여 「한 벌의 응접세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때에는 당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 ④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되어 있는 2 이상의 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디자인만을 디자인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을 하나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 ⑤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의 설명란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부분에 관한 설명 기재를 추가하는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21. 특허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2월은 28일까지 있는 것으로 한다)

- ①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해 2007. 12. 31.(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월의 지정기간을 주었을 경우, 출원인은 2008. 3. 2.(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월의 지정기간을 주었을 경우, 출원인은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정기간을 단축해 주도록 신청할 수는 없다.
- ③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이 2008. 12. 25.(목)인 경우에는 2008. 12. 25.(성탄절)이 공휴일이므로 실제 만료일은 2008. 12. 26.(금)로 자동 연장된다.
- ④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해 2008. 5. 26.(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월의 지정기간을 주었을 경우, 출원인은 2008. 7. 26.(토) 오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甲은 2002. 2. 10.(월) 일본에 a발명을 특허출원하고, 2002. 3. 10.(화) 미국에 a+b발명을 특허출원한 후, 이 두 출원을 기초로 파리협약에 의거하여 2003. 2. 1.(수) 우리나라에 a와 a+b발명을 우선권주장하여 출원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甲의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할 수 있는 최종일은 2008. 2. 1.(목)이다.

2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TRIPs 협정”이라고 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TRIPs 협정은 회원국이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② 회원국이 특허 보호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하더라도 TRIPs 협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③ TRIPs 협정은 회원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자기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TRIPs 협정은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TRIPs 협정에 규정된 권리소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 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 일방 회원국에 의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 나와 있고, 그 구성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 가지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와 관련이 없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②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해서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③ 미생물의 기탁은 출원명세서의 기재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 미생물들이 공지의 균주이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 제출 당시인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④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 ⑤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권리범위의 한계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뿐 아니라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24.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확정된 심결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여 새로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양 심판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소송 자체가 달라진다면 비록 확정된 심결의 심판에서 제출된 것과 동일한 증거를 제시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허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③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이 과거에 그 특허출원에 대해서 진보성이 결여되어 특허 받을 수 없으니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 심사관이었다면, 설사 거절결정 자체는 다른 심사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심판관은 당해 심판에 대해 심판관 제척사유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특허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보정의 적법성에 관하여도 이미 주장하였다면, 비록 특허출원인이 심사전치절차에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별도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결이 있을 때까지 달리 보정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아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25.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심판청구인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안이 B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A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이 실제로는 심판청구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고안이 B라는 것을 입증하였다면 그 심판 대상은 B가 되어야 한다.
- ②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③ 후출원하여 특허 받은 확인대상발명이 선출원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도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되지 않는다.
- ④ 특허에 관한 심판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 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26. 대학교수 甲은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카 엔진을 개발한 후 그 내용을 2008. 3. 4. A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乙은 A학회에 참석하여 甲이 개발한 하이브리드카 엔진이 자기가 그동안 비밀리에 연구해 온 하이브리드카 엔진과 동일한 기술구성을 가진 것임을 깨닫고 서둘러 자기의 명의로 하이브리드카 엔진에 관한 특허출원을 2008. 3. 10.에 하였으며, 甲은 이 하이브리드카 엔진에 관한 특허출원을 2008. 3. 11.에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의 발명과 乙의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모두 완성된 것으로 하며 설문 외의 별도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甲은 특허출원시 공지 예외를 주장하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였다면 乙의 선출원의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② 乙은 특허출원시 공지 예외를 주장하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甲이 특허출원시 공지 예외를 주장하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④ 甲의 특허출원은 乙의 특허출원에 의한 선출원주의 위반의 흠결을 극복할 수 없다.
- ⑤ 甲의 특허출원은 乙의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7. 甲은 신규한 화합물 A와 A'를 발명하였고 그 효과를 시험해 본 결과 모두 항균 작용이 있었으므로 A와 A'를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하여 2004. 3. 3. 특허출원을 하여 그대로 특허결정을 받아 2005. 7. 1.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한편, 甲은 A와 A' 중 효과가 보다 우수한 A만을 항생제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005. 6. 1.부터 약사법에 따른 활성·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약 2년간 진행하여, 2007. 8. 1.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7. 9. 1. 자료가 미비하여 추가 실험 자료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甲은 추가실험을 한 다음 2007. 10. 12.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2008. 1. 8. 최종적으로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이 2008. 5. 8.에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면 수리될 것이다.
- ② 특허청장은 甲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최종적으로 연장등록결정이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들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甲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2005. 6. 1.부터 2007. 9. 1.까지 소요된 기간과 2007. 10. 12.부터 2008. 1. 8.까지 소요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다.
- ④ 甲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등록결정 된다면 A와 A'를 모두 포함하는 청구항이 연장등록 될 것이므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A는 물론 A'에도 미치게 된다.
- ⑤ 甲이 乙에게 화합물 A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다면 乙도 상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28. 2006. 5. 7. 甲은 A와 B를 결합시켜 D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여 2007. 2. 4. 특허권 설정등록을 완료하였다. 乙은 A와 B를 물 속에서 결합시키면 D의 강도가 보다 견고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2007. 9. 7. A와 B를 수중에서 결합시켜 D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여 2008. 7. 9. 특허권 설정등록을 완료하였으며, 丙에게 이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乙의 발명은 甲의 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乙이 자기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려면 甲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 ② 乙이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통해 甲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으려면 乙의 발명이 甲의 발명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인정받아야만 한다.
- ③ 丙이 乙로부터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에 따라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甲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의 청구인 자격이 없으므로 乙로 하여금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
- ④ 乙이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에 의하여 甲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은 후, 甲도 乙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나 乙이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 甲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이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9.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함) 상의 특허독립의 원칙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리협약 제4조의2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상이한 국가에서 획득한 특허의 독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② 동맹국의 국민에 의하여 여러 동맹국에서 출원된 특허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동맹국 또는 비동맹국인가에 관계없이 타국에서 획득된 특허와 독립적이다.
- ③ 동일발명에 대한 제1국에서의 특허가 무효 또는 소멸이 되더라도 다른 동맹국에서 그 동일발명에 대한 특허가 자동적으로 무효 또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한 동맹국에의 특허출원을 기초로 다른 동맹국에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한 경우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이 거절결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파리협약은 특허독립의 원칙에 관한 조항과 별도로 상표독립의 원칙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30. 다음 괄호 속 A, B, C 에 들어갈 기간으로 바르게 조합된 것은?

- ㄱ.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그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A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ㄴ. 특허청장은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은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 B )이 경과한 때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 ㄷ.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 C )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 A   | B     | C  |
|---|-----|-------|----|
| ① | 30일 | 1년 6월 | 5년 |
| ② | 14일 | 1년 3월 | 5년 |
| ③ | 14일 | 1년 6월 | 3년 |
| ④ | 30일 | 1년 6월 | 3년 |
| ⑤ | 14일 | 1년 3월 | 3년 |

3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권에 대해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에는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당해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당해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특허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당해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 ⑤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32.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설문 중의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한다)

- ① 甲이 미국 내 특허출원이 없이 2007. 1. 12.에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영어로 한 경우, 甲이 2009. 8. 12.까지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영어로 한 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할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범위와 다른 청구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 ③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영어로 한 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 甲이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그 증명서류를 심사청구일 경과후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甲이 미국내 특허출원이 없이 2007. 1. 12.에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영어로 하고, 2008. 10. 20.에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심사청구기간은 2007. 1. 12.부터 5년 이내이다.
- ⑤ 甲은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영어로 하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서류와 동일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에 甲은 심사청구를 하면서 국제출원시 제출한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던 발명을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33.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간접 침해 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 ③ 특허법 제173조의 심사전치 절차에 있어서 심사관이 원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특허출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그 지정기간내에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없었던 경우에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특허무효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그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당해 특허의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⑤ 특허청구범위의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될 수 있다.

34. 특허의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허의 무효심판이 상고심 계속 중 당해 특허발명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③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장은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5.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서는 어떤 발명 또는 기술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 ④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에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⑤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6. 특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추인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절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
- ③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상속인은 언제나 중단 중인 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 ④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다시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자기의 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7.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허출원 후에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ㄴ.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ㄷ. 파리협약의 동맹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다.
- ㄹ.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그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그 표시된 날에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ㅁ.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된 전자문서는 당해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ㅂ. 국제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소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려면 국내에서 공개된 것이어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ㄴ, ㅁ
- ④ ㄱ, ㄹ, ㅂ
- ⑤ ㄴ, ㅁ, ㅂ

38. 국내우선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시에 기초가 된 선출원이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은 선출원일부  
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③ 특허에 관한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선출원의 최초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기재되어 있었으나, 보정에 의해 삭제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다.
- ⑤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한 출원이라도 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라면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다.

39.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2개의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날에 출원되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타출원에 대해 특허법 제36조에  
규정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ㄴ. 특허출원 X(X의 출원일: 2009. 1. 15. X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  
위에는 각각 발명 a와 b 모두가 기재됨)는 출원 A, B를 기초로 하는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2건(A의 출원일: 2008. 11. 6. B의 출원일: 2008. 12. 1. A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는 각각 발명 a만이 기재되었고 B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는 각각 발명 a와 b 모두가 기재됨)을 수반하였고,  
특허출원 Y(출원일: 2008. 11. 20.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 각각에  
발명 b만 기재됨)는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출원 X는 출원 Y에 대해  
특허법 제36조에 규정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ㄷ.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포기되었을 경우에는 특허법 제36조에  
규정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ㄹ. 특허출원 S(출원일: 2008. 8. 14.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일: 2007. 8. 18.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내용: a, b, c, 청구범위 기재내용: a, b)는 특허출원  
T(출원일: 2007. 9. 5.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없음,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내용 : a, b, c, 청구범위 기재내용: c)에 대해 특허법 제36조에 규정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 ㅁ. 특허출원 P(출원일: 2008. 2. 5. 우선권주장 없음)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 각각 발명 a, b가 기재되었고, 미국의 특허출원 Q(출원일: 2008.  
2. 3. 우선권주장 없음)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 각각 발명 a가  
기재되었다면 출원 P는 특허법 제36조의 선출원 규정에 의해 특허 받을 수  
없다.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⑤ ㄴ, ㄷ, ㅁ

40.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고안을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 ②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 하더라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기임이 명백하여 그 고안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 ③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는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해당된다.
- ④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는 공지의 기술보다 나은 증대된 실용적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작용효과를 요구할 뿐이며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현저한 작용효과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선 등록고안과 후 등록고안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등록고안은 선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며,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 등록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후 등록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등록고안 내에 선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